

감 사 실

○○○○ ○○ ○ ○○○ 사업장 민원 관련
환급이행업무 특정감사 실시계획

2016. 4

주택도시보증공사

1

감사배경

- ×××××××(주)의 「○○○ ○○ ○ ○○○」 환급이행 사업장 관련 □□□□관리센터에서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환급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것에 대하여
 - 분양계약자의 민원에 따른 ◆◆◆◆◆◆의 자체감사 요청이 있는 바, 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상근감사위원 직무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감사 실시

2

감사실시 개요

- 감사대상부서
 - □□□□관리센터
- 감사중점사항
 - 분양계약자 민원 관련 분양대금 환급금의 법원 공탁업무처리의 적정성
 - 환급금 공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
- 감사기간 및 인원
 - (감사기간) 2016. 4. 20(수) ~ 4. 26(화) [5영업일]
 - (감사인원) 총 2명

감사인	업무분장	비고
◆◆◆ 팀장	▶ 감사업무 총괄	감사 반장
○○○ 차장	▶ 분양대금 환급금의 법원 공탁업무 처리의 적정성 ▶ 환급금 공탁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	-

- ☐ (감사결과 보고)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, 상근감사위원, 주무부처 등에 보고
 - 사규 위반사항 등 발견시 상근감사위원직무규정 제17조에 따라 조치
- ☐ (감사결과 통보·점검) 감사결과 지적·개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이행현황 점검
- ☐ (감사결과 공유·공시) 감사결과를 사내전산망에 등록(GW-알림나라-자료실-감사자료실)하여 전직원에게 공유하고, 기획재정부 알리오 시스템 및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